전남지방우정청 공고 제2019 - 145호

2019년도 전남지방우정청 우정9급 우정서기보(계리) 공개경쟁채용시험 최종합격자 명단 공고

2019년도 시행 전남지방우정청 우정9급 우정서기보(계리) 공무원 공개경쟁 채용시험 최종합격자 명단 및 등록 관련 유의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2월 27일

전남지방우정청장

1. 최종합격자 명단

모집단위	합격인원	합격자 응시번호				
일 반 (광주·전남)	39명	500020	500049	500150	500191	500215
		500240	500326	500754	500769	500778
		500949	500985	501062	501149	501285
		501310	501468	501485	501525	501561
		501591	501610	501634	501752	501786
		501846	501919	501925	501969	502028
		502133	502190	502238	502436	502464
		502470	502500	502510	502527	
일 반 (완도보길)	1명	570043				
장 애 (광주·전남)	1명	580021				

2. 채용후보자 등록 안내

가. 등록 기간 : 2019. 12. 27.(금) ~ 2020. 1. 3.(금) 18:00까지

* 토·일요일 및 평일 점심시간(12:00~13:00)은 등록 불가

나. 등록 방법 : 우편접수 또는 방문접수

다. 유의 사항

○ 반드시 위 기간 내에 등록을 마치시기 바랍니다. 지정된 등록기간 내에 등록하지 아니할 때에는 「공무원임용령 제1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무원으로 임용될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 등록원서 및 제출서류는 '서식 모음'의 양식을 내려 받아 작성 방법을 참고하여 작성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3. 필기시험 합격자 성적 확인

가. 원서접수 시스템(http://kpost.jinhakapply.com)에서 2019. 12. 27.(금)부터 1개월 간

나. 성적관련 문의: 전남지방우정청 인력계획과(☎062-600-4733)

<첨부 1>

채용후보자 등록안내

- **등록대상** : 2019년도 우정9급 우정서기보(계리) 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 최종합격자 전원
- **등록기간** : 2019. 12. 27.(금) ~ 2020. 1. 3.(금) 18:00까지

  * 토·일요일 및 평일 점심시간(12:00~13:00)은 등록 불가
- **등록방법** : 우편접수 또는 방문접수 ※ 우정청의 재량으로 변경 가능

  ※ <첨부 3>의 '각종서식묶음'에 있는 작성 방법 및 유의 사항 참조
- **유의사항**

  지정된 등록기간 내에 등록하지 아니할 때에는 공무원임용령 제1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무원으로 임용될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됨

  등록의사가 없는 경우 반드시『등록포기서 작성』을 선택하여 작성함

  임용(추천)유예신청서 작성 : 아래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임용(추천)유예신청서를 작성함(먼저 채용후보자 등록 후 작성)

  - 임용(추천)유예를 1년 이상 받고자 하는 경우(예: 학업이 2학기 이상 남은 경우, 질병치료기간이 1년 이상 소요되는 경우, 군 입대 등)
  - 임용(추천)유예 신청자는 증빙서류(재학·휴학·재적증명서 등)를 . .()까지 제출하여야 함(기간 내에 우편도달이 어려운 경우 팩스로 미리 보내는 것도 가능)

  임용(추천)유예신청서 처리 : 제출된 임용(추천)유예신청서에 대하여 자격, 기간 등을 검토한 후 그 결과를 통보함

  ※ 임용(추천)유예의 기간은 채용후보자명부의 유효기간(2년)을 초과할 수 없음

제출서류 목록

서류명	매수	비 고
① 채용후보자 등록원서	1부	
② 신원진술서 (개인정보제공동의서 포함)	2부	개인정보제공동의서 포함 작성 동일한 사진(3cm×4cm) 2매 부착
③ 기본증명서(상세)	2부	주민등록번호가 모두 기재된 상세증명서로 제출
④ 가족관계증명서(상세)	1부	주민등록번호가 모두 기재된 상세증명서로 제출
⑤ 최종학력증명서	1부	졸업증서 사본 또는 검정고시합격증 사본도 가능
⑥ 자격증 사본	1부	해당자 한
⑦ 주민등록초본	1부	병역사항 및 주소변동이력 포함 발급(전체)
⑧ 경력증명서	1부	공무원경력 또는 국·공영기업체 근무경력 등
⑨ 취업지원대상자증명서	1부	해당자 한
⑨ 공무원채용신체검사서	1부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 제3조에 의한 의료기관에서 실시한 신체검사서
⑩ 증명사진	1매	3cm×4cm

<첨부 2>

□ 신규채용자 후보자 임용절차 FAQ

【 아래는 문의가 잦은 사항들에 대하여 정리한 것이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Q. 합격자입니다. 앞으로의 대략적 일정은 어떻게 됩니까?

A. 먼저 합격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앞으로의 주요 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 **채용후보자 등록**(채용후보자 등록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첨부물 1 참고) → 신원조사 등 임용결격사유 확인 → 지역우체국 임용추천 → 이상 없으면 임용

▶ 구체적인 임용 시기는 채용후보자 등록 순번 및 결위 발생 규모에 따라 차이가 있음

Q. 2019년 시행 우정9급(계리) 공채시험 최종합격자가 우선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A. 지방우정청에서 안내하는 기간에 관련 서류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이때 임용포기의사가 있는 분은 **임용포기서 작성을,** 임용추천유예 신청을 하실 분은 **임용(추천)유예 신청서**를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임용(추천)유예 신청은 채용후보자등록을 먼저 하여야 가능합니다.

제출하실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 **《신원진술서》 2부** (지정된 서식에 따라 자필로 작성) - 서식은 「첨부물2」
  ※ 사진(3㎝×4㎝) 2매 필요 - 인화지에 인화된 사진 사용
- **《기본증명서》**(신원조회용), **《가족관계증명서》**(인사부서 보관용) 각 1통
  ※ 주민등록번호 뒷 번호까지 모두 기재된 것
- **《주민등록초본》 1통**
  ※ 군필자임에도 초본에 군 경력이 기재되지 않은 경우《병적증명서》1통
- **《최종학교 졸업/재학/휴학/재적 증명서》 1통**
  ※《졸업증서/검정고시합격증 사본》으로 대체 가능
- **《면허증/자격증 사본》 1통** (면허증/자격증 소지자에 한함)
- **《채용신체검사서》** - 서식은 「첨부물2」
  ※ 사진(3㎝×4㎝ 또는 2.5㎝×4㎝) 1매 필요

Q. 《신원진술서》 내용 중 보증인에 부모님을 써도 됩니까?

A. 부모형제 등 가족은 쓰지 마시고, 삼촌 등 친척이나 선후배 등을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Q. 채용후보자 등록을 할 때, 《경력》에는 무슨 일까지 써야 합니까?

A. 공무원 재직경력이나 국공영/민간 기업체 근무경력, 일반사회경력 등으로써 배치 후 인사에 참고가 될 만한 경력을 쓰시면 됩니다.
* 특정경력자에 대한 특별추천 시 활용될 수도 있습니다.

Q. 주소나 연락처가 바뀌어서 변경신청을 하려고 합니다.

A. 주소변경은 지방우정청으로 배치를 받으신 후 주소변경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채용후보자 등록원서상의 기재와 달라도 됩니다. 수시연락을 위한 전화번호 등 연락처 변경사항은 채용후보자등록원서 작성 시 변경기재하면 됩니다.

Q. 개명, 오기 등으로 주민등록등본과 호적등본의 주민번호, 이름 등이 다릅니다.

A. 읍/면/동사무소에 문의하여 일단 정정하여 주민등록등본과 기본증명서 기재사항 등을 통일시킨 후 응시원서와 다른 경우 본인이 직접 변경 신청하셔야 합니다.

Q. 임용(추천)유예신청을 하고자 합니다.

A. 학업의 계속(졸업까지)이나 군복무 등으로 인하여 2020년 이후에 임용이 가능하여 임용(추천)유예기간이 1년 이상 필요한 경우에는
- 채용후보자 등록기간에 채용후보자 등록사이트를 통해 유예신청을 하시고, 이와 관련된 증빙자료(재학 또는 휴학증명서, 병원발급 진단서, 군복무 확인서, 입대예정서 등)를 해당 지방우정청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 유예 신청기간은 1년 단위로 하되, 더 필요하면 연장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 1년 이내에 졸업이나 전역을 하여 2020년 중에 임용이 가능한 경우, 즉 임용유예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지방우정청 배치 후 임용예정기관에 신청

Q. 학업을 계속하기 위하여 내년에 대학(원)에 진학하려 합니다. 임용(추천)유예가 가능한지요?

A. 공무원임용령에서의 임용유예 허용요건인 '학업의 계속'은 현재 진행 중인 학업을 계속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따라서 시험합격 후에 새로이 등록을 하여 시작하는 학업의 경우는 임용유예가 허용되지 않습니다. 임용(추천)유예란 공채시험 합격자가 학업, 질병치료,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공무원으로 임용받기가 어려운 경우 유예사유를 해소할 수 있도록 일시적으로 임용을 늦추어 주는 제도로서, 그 허용기간은 채용후보자 명부의 유효기간인 2년의 범위 이내입니다. 아래 사항은 임용(추천)유예와 관련하여 질의를 많이 받는 사례입니다.

① 학업의 계속을 사유로 임용(추천)유예를 허가 받았는데 이 기간 중 해외 어학연수를 다녀오거나 휴학을 할 수 있는지?

- 원칙적으로 유예기간은 유예사유를 해소하는데 사용되어야 합니다. 만약 어학연수나 휴학으로 인해 학업을 다 마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더라도 다시 임용유예를 연장하는 것은 허용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② 대학 1학년을 마치고 휴학한 후 시험에 합격하였습니다. 임용유예를 3년간 할 수 있는지요?

- 앞서 말씀드린 대로 임용유예는 채용후보자명부 유효기간인 2년의 범위 내에서만 가능합니다. 따라서 위 경우는 2년의 기간 내에 학업도 마치고 임용도 받아야 할 것입니다.
- 다만, 임용(추천)유예 종료자의 임용절차 등에 필요한 경우 임용(추천)유예기관이 판단하여 채용후보자명부 유효기간을 1년의 기간 내에서 연장할 수 있습니다.

③ 대학 3학년을 마친 상태에서 시험에 합격하였습니다. 내년에 군입대도 해야 하고, 제대 후 복학해서 학업을 계속해야 하는데 가능한가요?

- 가능합니다. 채용후보자 명부의 유효기간은 2년이지만 군입대(군복무) 기간은 이 유효기간의 계산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이 경우는 군복무기간을 제외하고 2년간의 채용후보자명부 유효기간을 보장받으므로 제대한 후 학업을 위해 1년간 임용(추천)유예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④ 방송통신대학교나 야간대학원에 다니는 경우도 임용유예가 가능한가요?

- 학업관련 임용(추천)유예는 임용을 받음으로 인해 학업을 종료하기 어려운 경우에 한하여 인정됩니다. 따라서 임용을 받더라도 학업을 병행할 수 있는 방송통신대와 야간대학원 재학의 경우 임용유예가 허용되지 않습니다.

<첨부 3>

[채용후보자 등록원서 작성례 및 주의사항]

2019년 우정9급우정서기보(계리) 9급공채 ( )

※시험성적	1차 : 00.00 2차 : 00.00	※등록번호	1	※등록심사	
※명부유효기간	등록일자 : 일로부터 2년간 기간연장 : 까지(근거:)				

임용대상지역	응시지역	응시번호	사진
광주전남	광주전남	00000000	
① 성명	(한글) 홍길동 (한자) 洪吉童 (영문) Hong, Gildong		
주민등록번호	820101-1111000	이메일 abc123@naver.com	
② 신체사항	혈액형 : A 형		

③ 병역관계	병역필 / 면제 / 미필 / 여성 면제사유 : 제2국민역(신체등위 5등급)		
④ 현주소	우편번호 : 04520 서울시 중구 청계천로 8	⑤집(직장)	02-751-1234
		핸드폰	010-751-1234

⑥ 학력	학교명		기간	세부내용
	국민	고등학교(검정고시)	1998년 3월~2001년 2월	년 졸업
	한국	대학(교)	2001년 3월~2005년 2월	경영학과 4년 졸업
		대학(교)	년 월~ 년 월	학과 년 졸업
	한국대 행정	대학원	2005년 2월~ 년 월	행정학과 2학기 재학

⑦경력	근무처	기간	직위	발령청

⑧ 자격·면허	년월일	종별	시행기관	⑨ 상벌사항	년월일	종별	시행기관
	20021201	정보처리기사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		20030501	대통령표창	대통령
					20050402	벌금100만원	서울중앙지법

⑩ 가족사항	관계	성명	생년월일
	부	홍가나	19500701
	모	박다라	19500701
	형	홍마바	19770701
	누나	홍사아	19790701

⑪ 비상연락처	관계	성명	나이	현주소	연락처
	형	홍마바	30	서울시 중구 청계천로 8	010-222-0000
	친구	한사랑	25	서울시 중구 청계천로 8	010-223-0000

위 본인은 시험응시합격자와 동일인으로서, 위에 기재한 사항은 사실과 다름 없음을 서약하며, 채용후보자로서 등록하고자 출원합니다. √ 확인

2019. . .

출원자 :

전남지방우정청장 귀하

<작성 시 주의사항>

※ 음영 부분의 시험성적, 등록번호, 등록심사, 명부 유효지간은 작성하지 않습니다.
※ 만약 위 음영부분에 있는 내용이 응시원서 작성 시와 다른 경우에는 관련 증명서를 전남지방우정청에 제출하고 변경하시기 바랍니다.
예) 1. 올해 6월에 개명신청이 받아들여져 법원에서 개명을 인정한 경우(판결문 사본)
2. 호적등본과 주민등록표상의 성명(한글, 한자)이나 주민등록번호가 다른 경우 정정결과 등

① 성명 : 본인의 기본증명서 또는 주민등록상의 이름과 같게 합니다. 영문명은 여권에 기재된 것과 동일하게 적습니다.

② 신체사항 : 신체사항 중에서 본인의 혈액형만 적습니다.

③ 병역관계 : 해당부분을 체크하고 관련내용을 기재합니다.

ⅰ) 병역을 필한 경우 : 주민등록초본을 보시고 해당되는 것을 적으시면 됩니다.

예) 역종:예비역, 군별:육군, 병과:보병, 계급:병장, 군번:02-0000000

입대년월일 20020101 제대년월일 20040228

* 전환복무자, 상근예비역 등은 주민등록초본을 보고 작성하십시오

ⅱ) 면제의 경우 : 주민등록초본을 보고 해당되는 것을 적으시면 됩니다.

예) 면제사유 : 제2국민역(신체등위5급) 또는 병역면제(신체등위6급)

ⅲ) 미필의 경우 : 미필을 체크하고 미필사유를 적습니다.

ⅳ) 여성

④, ⑤ 현주소 및 전화번호 : 현재 연락을 받을 수 있거나 우편물 수령이 가능한 전화번호나 주소를 기입합니다. 응시원서 작성 시의 주소나 전화번호와 달라도 상관없습니다.

⑥ 학력 : 본인의 학력을 기재합니다.

- 학교명을 적을 때에는 '고등학교', '대학교' 등이 중복되지 않도록 적으십시오.

예) 한국 대학(교) (O) / 한국대학교 대학(교) (x)

- 세부내용의 '년'은 학년을 표시 하십시오

예) 가령 한국대학교 경영학과 3학년에 재학 중이면 '3년'으로 표기

- 검정고시 출신인 경우 고등학교 졸업자격 검정고시 합격증 발행년월을 기재합니다.
- 3개 이상의 대학(교) 학력이 있는 경우 본인이 선택한 학교 2개까지만 기재합니다.

예) 전문대졸업→(편입)→A대학교 졸업 후, B대학교 입학 및 재학 중인 경우 이중 2개의 학교만 기재

- 현재 휴학 중인 사람은 (졸업, 재학, 수료, 중퇴 중) "재학"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⑦ 경력: 특정경력자 등의 특별추천 필요시 활용할 자료이므로 본인이 원하지 않으면 기재하지 않아도 됩니다.

- 공무원경력, 국·공영기업체 근무경력 뿐만 아니라 민간근무경력도 기재합니다.

- 단순한 아르바이트, 시간제 근무자 등 정규직원이 아닌 채로 근무한 경력은 기재하지 아니합니다. 다만, 기간제 계약직으로 국가 또는 지방행정기관에서 3개월 이상 상근한 경우는 호봉에 반영(9급 호봉 인정)이 될 수 있으므로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근무처	기간	직위	발령청
예)	국세청	20050301 - 20061205	세무주사보	국세청장

※ 기간을 적을 때에는 해당사항의 기간이 종료된 경우는 종료시점을 적되, 현재도 계속되고 있는 경우에는 채용후보자 등록원서 작성시점을 기재하거나 공란으로 남겨 놓음

예) 12월 5일 채용후보자 작성시점에서 국세청에 근무하는 사람은 위의 예와 같이 적거나 종료시점을 기재 않고 넘어가면 됨

⑧ 자격·면허: 특정자격증 소지자 등 특별추천 필요 시 활용할 자료이므로, 본인이 소지한 자격·면허증 중 현재 유효한 기간 내에 있는 것만 기재합니다.

	년월일	종별	시행기관
예)	20050302	공인회계사	재정경제부장관

* 본인이 원하지 않으면 기재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⑨ 상벌사항은 본인의 수상사항, 형사처벌, 공무원으로 재직 시 받은 징계처분, 민법상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파산자 여부 등을 기재합니다. 수상사항은 민간 또는 공무원 재직 시 받은 장관급 이상의 표창이나, 훈·포장 등을 기재합니다.(벌금형 미만의 형벌사항은 기재하지 않아도 됨)

⑩ 가족사항: 반드시 주민등록표나 가족관계증명서상의 가족과 일치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기재 시에는 직계존속, 배우자, 직계비속, 형제자매 순으로 기재합니다.

⑪ 비상연락처: 본인과 연락이 되지 않을 때 연락이 닿을 수 있는 곳을 적되 ⑤에 기재한 전화번호 이외의 번호를 기재함

등록·임용 포기서

(□ 등록 / □ 임용)

▪ **시험구분 :** 2019년 우정9급(계리) 공무원 공채

▪ **응시번호 :**

▪ **성 명 :** ▪ **주민등록번호 :** -

▪ **주 소 :**

(우편번호 -)

▪ **전화번호 :** 일반전화 - - , 휴대전화 - -

위 본인은 ( ) 사정으로 인하여 공무원으로 임용될 의사가 없으므로 □ 등록 / □ 임용을 포기하고자 합니다.

일자 : 년 월 일

성명 : (서명/인)

전남지방우정청장 귀하

※ 괄호안 **포기사유** 예시 : 학업, 지방공무원시험합격(임용), 취업, 사업, 질병, 가사형편 등
※ 성명 옆에는 반드시 **자필로 서명 또는 날인**을 하시기 바랍니다.
※ 주소·전화번호는 주민등록상의 주소 또는 응시원서상의 것과 달라도 되며, 현재 우편물을 받거나 연락받을 수 있는 곳으로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용(추천)유예 신청서

(□ 신규 / □ 연장)

▪ **시험구분 :** 2019년 우정9급(계리) 공무원 공채

▪ **응시번호 :**

▪ **성 명 :** ▪ **주민등록번호 :** -

▪ **주 소 :**

(우편번호 -)

▪ **전화번호 :** 일반전화 - - , 휴대전화 - -

유예신청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위 본인은 ( ) 사유로 위와 같이 임용추천 유예를 신청합니다

일자 : 년 월 일

성명 : (서명/인)

첨부 : 증빙서류 1부

전남지방우정청장 귀하

※ 성명 옆에는 반드시 **자필로 서명 또는 날인**을 하시기 바랍니다.
※ 증빙서류는 본 신청서와 함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소·전화번호는 주민등록상의 주소 또는 응시원서상의 것과 달라도 되며, 현재 우편물을 받거나 연락받을 수 있는 곳으로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작성방법 】

1. 유예신청기간

○ 시작시점은 작성일자를 기재합니다.

○ **유예기간은 1년 기간의 단위로 작성함(예 2020. 0. 0 ~ 2020. 0. 0)**

○ 단, **유예기간이 1년 미만이면**, 종료시점에는 실제로 유예사유가 끝나는 날짜를 기재

○ **유예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1년이 지난 후 연장신청을 하여야 함**

2. 증빙서류는 임용유예신청서와 함께 제출합니다.(채용후보자 등록사이트에서 임용유예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증빙서류 제출기간 및 장소를 별도로 고지함)

○ 현재 휴학 중인 경우 휴학증명서를 먼저 제출하고, 복학 후 재학증명서를 다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 질병치료를 위한 경우 '6개월 이상의 치료를 요한다는 진단서'가 필요합니다.

○ 군 복무에 따른 경우 '입영통지서 사본', '복무확인서', '전역예정증명서' 등 관련서류 1부를 제출하고, 전역 후에는 병역사항이 기록된 주민등록초본 1부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임용(추천)유예 철회원

▪ **시험구분 :** 2019년 우정9급(계리) 공무원 공채

▪ **응시번호 :**

▪ **성 명 :** ▪ **주민등록번호 :** -

▪ **주 소 :**

(우편번호 -)

▪ **전화번호 :** 일반전화 - - , 휴대전화 - -

위 본인은 임용추천유예 사유가 소멸되어 임용을 받고자 임용추천유예 철회원을 제출합니다.

일자 : 년 월 일

성명 : (서명/인)

첨부 : 증빙서류 1부

전남지방우정청장 귀하

※ 성명 옆에는 반드시 자필로 서명 또는 날인을 하시기 바랍니다.
※ 증빙서류는 본 신청서와 함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소·전화번호는 주민등록상의 주소 또는 응시원서상의 것과 달라도 되며, 현재 우편물을 받거나 연락받을 수 있는 것으로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증빙서류는 임용유예철회신청서에 첨부하여 함께 제출합니다.
* 예: 졸업증명서, 군 복무가 기재된 주민등록초본 등

주소변경신고서

▪ **시험구분 :** 2019년 우정9급(계리) 공무원 공채

▪ **응시번호 :**

▪ **성 명 :** ▪ **주민등록번호 :** -

▪ **전화번호 :** 일반전화 - - , 휴대전화 - -

▪ **주요내용** (연락 가능한 주소 또는 전화번호가 원서 제출 시와 달라진 경우)

주 소 :

(우편번호 -)

전화번호 : 일반전화 - - , 휴대전화 - -

위 본인은 주소 또는 전화번호가 변경되었기에 신고합니다.

일자 : 년 월 일

성명 : (서명/인)

전남지방우정청장 귀하

※ 주소와 전화번호 중 한 가지만 바뀐 경우에도 둘 다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성명 옆에는 반드시 **자필로 서명 또는 날인**을 하시기 바랍니다.

인적사항 변경 신청서

(응시원서 제출 후 성명 또는 주민등록번호가 바뀐 경우)

▪ **시험구분 :** 2019년 우정9급(계리) 공무원 공채

▪ **응시번호 :**

▪ **변 경 전**

성 명 : ▪ **주민등록번호 :** -

전화번호 : 일반전화 - - , 휴대전화 - -

▪ **변 경 후**

성 명 : ▪ **주민등록번호 :** -

전화번호 : 일반전화 - - , 휴대전화 - -

▪ **변경사유 :**

위 본인은 채용후보자 명부작성 및 향후 공무원임용 시 사용될 인적사항에 변경사유가 발생하였으므로 변경을 신청합니다.

일자 : 년 월 일

성명 : (서명/인)

첨부 : 증빙서류 1부

전남지방우정청장 귀하

※ 주소와 전화번호 중 한 가지만 바뀐 경우에도 둘 다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성명 옆에는 반드시 **자필로 서명 또는 날인**을 하시기 바랍니다.

■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별지 제1호서식]

(앞쪽)

신체검사용 채용 신체검사서

※ 뒤쪽의 유의사항 및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① 구 분	② 시험실시기관	③ 응시직명	④ 응시번호	⑤ 성 명		사 진 (3.5㎝ × 4.5㎝) ※ 압인 또는 계인
⑥ 검사 시						
⑦ 재사용				⑧ 주민등록번호		

검 사 내 용

키	cm		체 중	kg	
허리둘레	cm		혈 압		
(교정)시력	좌: ( ) 우: ( )	색 신 (색 각)		(교정)청력	좌: ( ) 우: ( )
종 양 질 환			이비인후질환		
호 흡 기 질 환			심 혈 관 질 환		
소 화 기 질 환 (간 질 환 포함)			신장/비뇨기계질환		
내 분 비 질 환			혈 액 질 환		
신 경 질 환			피 부 질 환		
근골격계 질환			안 질 환		
정 신 질 환			흉부X선 검사		
기 타					

위와 같이 검사했습니다.

년 월 일

검사자(담당의사) (서명 또는 인)

검사 결과 합격 여부	[ ]합 격 [ ]판정보류	합격 사유	
판정보류 사유 (질환명 및 재신체검사 필요 사유 등)	* 필요시 소견서 별도 첨부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판정했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검진기관의 장 (서명 또는 인)

유효기간	판정일부터 1년

210㎜×297㎜[백상지(80g/㎡)]

유의사항 및 작성방법

[응시자]

1. 응시자는 굵은 선 안에만 정확하게 적어야 합니다.
   가. ②란은 시험실시기관을 적어야 합니다.
   (예: 인사혁신처, 국세청 등)
   나. ③란에는 응시한 직명을 적어야 합니다.
   (예: 9급 세무직, 7급 전기직 등)
   다. ⑦란은 신체검사 후 1년 이내에 같은 직렬의 다른 시험에 응시하는 등의 사유로 다시 사용할 경우에 적어야 합니다.

2. 응시자는 굵은 선 안쪽의 사항을 모두 적은 후에 신체검사서를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과 함께 신체검사를 실시하는 검진기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 응시자는 본인 질환에 대해 별지 제2호서식의 전문의 소견서를 미리 제출할 수 있습니다.

[검진기관]

1. 응시자의 사진에는 반드시 압인(押印) 또는 계인(契印)을 해야 합니다.
2. "검사 내용" 란은 검사자가 검사 결과를 적고 확인해야 합니다.
   가. 검사 결과 기재의 예: 질병명(심부전증, 백혈병, 척수종양 등)을 적거나 "정상", "양호", "이상 없음" 등으로 적어야 함

   ※ 필수사항: 질병이 있는 경우 "합격" 또는 "불합격"과 관계없이 반드시 질병명을 적어야 함

   ※ 검진기관에서는 필요시 병원에서 건강검진을 위해 활용하고 있는 문진표를 채용 신체검사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나. 임산부나 흉부X선 검사를 받을 수 없는 특별한 건강상의 이유가 있는 응시자에 대해서는 흉부X선 검사를 면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면제 사유를 흉부X선 검사 항목에 적습니다.
   - (작성 예시) 임산부인 경우 "임신으로 인해 흉부X선 검사 면제" 라고 적습니다.

3. "검사 결과 합격 여부" 란 등에는 신체검사를 실시한 검진기관의 장이 판정 결과 등을 해당 []안에 "√" 로 표시하고 그 사유 등을 적어야 합니다.

   ※ 응시자가 본인 질환에 대해 전문의 소견서를 미리 제출한 경우 판정에 참고합니다.

   가. 합격 사유 기재의 예
   - '신체검사 불합격 판정기준' 에 해당하지 않음
   - 0000 질환에 해당하나 000000한 이유로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가능함(예시: '만성골수성백혈병' 에 해당하나 글리벡 복용 후 세포유전학적 완전 관해(官解)에 도달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가능함)

   나. 판정보류 사유 기재의 예
   - 0000 질환에 대해서는 000000한 이유로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가능할지 의심되므로 000000 분야 전문의의 재신체검사 필요 (예시: 중추신경계 염증성 질환이 있는 경우로 사지가 쇠약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가능할지 의심되므로 신경과 분야 전문의의 재신체검사가 필요함)

   ※ 응시자의 질환이 '신체검사 불합격 판정기준' 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판단이 곤란한 상황으로 관련 분야의 전문의가 재신체검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4. 검사 결과에 대한 판정은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에 따라야 합니다.

■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 [별지 제2호서식]

전문의 소견서

※ 하단의 유의사항 및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① 시험실시기관		③ 성 명		사 진 (3.5㎝ × 4.5㎝) ※ 압인 또는 계인
② 응시직명		④ 주민등록번호	-	

응시자의 질환명	
응시자의 질환과 업무수행 지장 여부에 대한 의견	※ 필요한 경우 양식을 변경하거나, 다른 소견서 양식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응시자의 질환과 업무수행 지장 여부에 대하여 위와 같은 의견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_____전문의 (서명 또는 인)

※ 소속 병원명 : (☏)

유의사항 및 작성방법

[응시자]

응시자는 굵은 선 안에만 정확하게 적어야 합니다.

- ①란에는 시험실시기관(예: 인사혁신처, 국세청 등), ②란에는 응시한 직명(예: 9급 세무직, 7급 전기직 등)을 적어야 합니다.

[전문의]

1. 응시자의 사진에는 반드시 압인(押印) 또는 계인(契印)을 해야 합니다.
2. 위 소견서는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에 따라 신체검사를 실시하는 검진기관에서 응시자의 질환이 신체검사 불합격 판정기준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기 위한 참고 자료로 활용됩니다.
   - 응시자의 질환으로 인하여 업무수행에 큰 지장이 있을지에 대한 의견을 작성합니다.

210㎜×297㎜[백상지(80g/㎡)]

■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 [별지 제3호서식]

(앞쪽)

재신체검사용 채용 신체검사서

※ 뒤쪽의 유의사항 및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① 구 분	② 시험실시 기관	③ 응시 직명	④ 응시 번호	⑤ 성 명		사 진 (3.5㎝ × 4.5㎝) ※ 압인 또는 계인
⑥ 검사 시						
⑦ 재사용				⑧ 주민등록번호	-	

신체검사 판정보류 질환에 대한 전문의 검사결과 (재신체검사 결과 등)	

신체검사 결과 판정보류 원인이 된 질환에 대하여 위와 같이 검사하였습니다.

년 월 일

검사자(분야 전문의) (서명 또는 인)

신체검사 판정결과	[ ]합 격 [ ]불 합 격 [ ]판 정 보 류	합격 사유	
불합격 또는 판정보류 사유	* 필요시 소견서 별도 첨부		

신체검사 판정보류 질환에 대한 해당 분야 전문의의 재신체검사 결과를 근거로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판정했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검진기관의 장 (서명 또는 인)

유효기간	판정일부터 1년

210㎜×297㎜[백상지(80g/㎡)]

(뒤쪽)

유의사항 및 작성방법

[응시자]

1. 응시자는 굵은 선 안에만 정확하게 적어야 합니다.
   가. ②란은 시험실시기관을 적어야 합니다.
   (예: 인사혁신처, 국세청 등)
   나. ③란에는 응시한 직명을 적어야 합니다.
   (예: 9급 세무직, 7급 전기직 등)
   다. ⑦란은 신체검사 후 1년 이내에 같은 직렬의 다른 시험에 응시하는 등의 사유로 다시 사용할 경우에 적어야 합니다.
2. 응시자는 굵은 선 안쪽의 사항을 모두 적은 후에 신체검사서를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과 함께 신체검사를 실시하는 검진기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3. 신체검사에서 판정보류의 원인이 된 질환이 복수인 경우, 같은 분야의 질환을 제외하고는 각각의 질환에 대해 재신체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검진기관]

1. 응시자의 사진에는 반드시 압인(押印) 또는 계인(契印)을 해야 합니다.
2. "신체검사 판정보류 질환에 대한 전문의 검사결과" 란에는 신체검사에서 판정보류의 원인이 된 질환에 대한 해당 분야 전문의의 추가적인 검사 결과를 적습니다.
   - (작성 예시) 신체검사에서 재신체검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된 0000 질환에 대하여 0000 한 이유로 00000 라고 판단함
3. "신체검사 판정결과" 란에는 신체검사서(별지 제1호서식)에 기재된 판정보류 사유와 이에 대한 전문의 검사 결과를 고려하여 합격, 불합격, 판정보류 여부를 적습니다.
   가. 합격 사유('신체검사 불합격 판정기준' 에 해당하지 않음) 기재의 예
   - 에디슨병(만성부신피질기능부전)이 있으나 호르몬 치료 등을 병행하는 경우 공무 수행이 가능한 경우
   - 두 눈의 교정시력이 모두 0.2 이하이지만 글씨를 충분히 확대할 경우 업무처리가 가능한 경우
   - 적절한 치료를 병행하는 경우 치료를 받으면서 업무수행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나. 판정보류 사유 기재의 예
   - 치료 시 증세가 호전될 수는 있지만, 당장 치료와 업무를 병행할 수 없어 합격 판정을 할 수 없는 경우로서, 치료와 업무를 병행할 수 있게 될 때까지 치료를 위해 판정보류를 유지

   ※ 재신체검사에서 판정보류를 받은 경우, 해당 재신체검사만 다시 받으면 됩니다.

   다. 불합격 사유 기재의 예
   - 해당 질환에 대해 적절한 치료를 실시하더라도 업무 수행에 큰 지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3. 검사 결과에 대한 판정은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에 따라야 합니다.

[별지 제20호서식] <개정 2017.2.22.>

신 원 진 술 서

※ 모든 기재사항은 빠짐없이 기재하고 ☑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쪽)

성 명		한 자		주민등록번호		[사 진] 사진파일 가능 (3cm×4cm)· (3.5cm×4.5cm)
등록기준지						
주 소						
실거주지						
직 장	직장명 : 소재지 :			연락처	직장전화 : 휴 대 폰 : E-mail :	
국 적	☐ 대한민국	☐ 복수국적 국가명:	☐ 외국국적 국가명:	배우자 및 자녀 국적		
특 기		취 미		자격증		
재 산	본인 및 배우자	부동산 : 만원, 동산 : 만원, 채무 : 만원				
	미혼 자녀	부동산 : 만원, 동산 : 만원, 채무 : 만원				
정당·사회 단체 활동	☐ 있음	단 체 명		기 간		직 책
	☐ 없음			. . ~ . .		
				. . ~ . .		
병 역	본 인	군 별	병 과	최종 계급	기 간	미필 사유
					. . ~ . .	
	자 (성명)				. . ~ . .	
	자 (성명)				. . ~ . .	
학 력	학 교 명	기 간		전공 학과	학 위	소 재 지
		. . ~ . .				
		. . ~ . .				
		. . ~ . .				
		. . ~ . .				

경 력	기관 또는 업체명		기 간	직 책(직급)	상벌 관계(일자)
			. . ~ . .		
			. . ~ . .		
			. . ~ . .		
해외 거주 사실	거주 국가		기 간	거주 목적	동반 가족
			. . ~ . .		
			. . ~ . .		
가족 관계	관 계	성 명	생년월일	직 업·직 책	거 주 지
부모 배우자 자녀					
배우자 부모					
북한 거주 가족					

친교 인물	관 계	성 명	직 업·직 책	연 락 처

1. 위 내용은 사실과 다름이 없으며, 기재사항 누락 또는 허위기재 사실이 있을 경우 「국가공무원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고지 받았음을 확인합니다.
2. 사실관계 확인을 위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따라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작 성 자 성명 인(서명 또는 날인)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 본인은 공직임용에 있어 신원조사기관이 본인에 대한 신원조사를 실시할 필요가 있다는 것과 개인정보(범죄경력 등 민감정보 포함. 이하 동일) 수집 목적 등 아래 유의사항을 이해하였으며, 이를 위해 「개인정보보호법」 등에 의해 보호되고 있는 본인의 개인정보를 동법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의 규정 등에 따라 신원조사기관에 제공하는데 동의합니다.

■ 이에 따라, 개인정보 보유기관장은 원활한 신원조사를 위해 본인에 관한 개인정보를 해당 신원조사기관에게 제공하여 줄 것을 요청합니다.

■ 본인(가족 포함)이 서명한 동의서 복사본은 원본과 동일하게 유효하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유의사항 (개인정보 수집 목적·관리방법, 정보제공 동의 거부 가능 고지)
▪ 수집된 개인정보자료·개인정보 제공 동의서는 신원조사 목적으로만 사용되고, 「공공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에 따라 관리·폐기되며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은 아래와 같습니다. ▪ 개인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정보 제공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신원조사를 진행할 수 없어 공직임용 등에 제한을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019 년 월 일

성명 (서명)

■ 본인 및 가족 동의(자녀는 결혼·해외거주 등에 불문하고, 미성년은 본인대리 서명 가능)

구 분	성 명	생년월일	서 명	
			개인정보 제공 동의	민감정보 제공 동의
본인				
배우자				
자녀				
자녀				
자녀				

※ 신원조사를 위해 수집되는 개인정보 항목 (밑줄은 민감정보)

본 인	가 족
▪ 주민등록·가족관계등록부, 공무원인사기록(행안부·인사처) ▪ 주민·범죄경력·수사·수배 조회자료(경찰청) ▪ 출입국자료(법무부) ▪ 토지·주택자료 및 자동차 등록원부(국토부) ▪ 소득 및 개인·법인 사업자 자료(국세청) ▪ 병적자료(병무청·안보사) ▪ 질병자료(국민건강보험공단) ▪ 금융기관 대출자료(전국은행연합회)	▪ 주민등록·가족관계등록부(행안부) ▪ 주민·범죄경력·수사·수배 조회자료(경찰청) ▪ 출입국자료(법무부) ▪ 토지·주택자료 및 자동차등록원부(국토부) ▪ 소득 및 개인·법인 사업자 자료(국세청) ▪ 병적자료(병무청·안보사) ▪ 금융기관 대출자료(전국은행연합회)

【 작성 예시 및 주의사항 】

〈 유의사항 〉

① 신원조사를 위한 신원진술서 작성 및 제출은 보안업무처리규정에 의해 공무원으로 임용되기 전에 반드시 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해당되는 모든 사항에 대하여 성실히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② 신원진술서는 2부를 작성합니다.
③ 양면인쇄가 원칙이나, 양면인쇄가 곤란한 경우 단면(2장)도 가능합니다.
④ 신원진술서에 사용되는 사진은 인화지에 인화된 사진이어야 하며 동일 원판, 동일 크기의 사진이어야 합니다.
⑤ 자필로 작성하는 것이 원칙이나, 워드프로세서로 작성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단, "서명 또는 날인"은 2부 모두 반드시 자필로 하시기 바랍니다.
⑥ 모든 항목에는 반드시 내용이 기재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해당사항이 없는 곳에는 "해당사항 없음"이라고 기재 하십시오

【 작성방법 】

① 성명, ② 주민등록번호, ③ 등록지

○ 주민등록등본 및 기본증명서를 참고하여 작성합니다.

○ 신원진술서 조회는 합격자의 해당 본적지 관할 경찰서에서 하게 되며 제출한 주민등록등본, 기본증명서 등을 참고로 하기 때문에 주민등록표상의 성명, 주민등록번호와 모두 일치하여야 합니다.

○ 개명 등으로 응시원서 등의 성명과 주민등록표상의 이름이 다른 경우, 호적등본과 주민등록표상의 성명이 다른 경우에는, 이의 정정·동일화는 별론으로 하고, 주민등록표상의 성명·주민등록번호를 기준으로 작성합니다.

④ 주소: 현재의 주소로 주민등록초본상의 주소를 기재합니다.

⑤ 직장명 및 소재지: 현재 직장에 다니고 있는 사람만 기재합니다.

⑥ 전화번호: 본인에게 직접 연락이 될 수 있는 전화번호를 기재합니다.

⑦ 본인 및 배우자 재산

동산과 부동산은 민법상의 개념입니다.

- 미혼인 경우: 본인의 명의로 되어 있는 부동산, 동산의 액수를 기재
- 기혼인 경우: 본인 및 배우자의 명의로 되어 있는 부동산, 동산의 액수를 기재

⑧ 정당, 사회단체 활동경력

○ 본인이 가입한 정당이나 사회·시민단체에 관하여 기재합니다.

○ 해당사항이 없으면 기재하지 않거나 '해당 없음'이라고 기재합니다.

⑨ 병역관계

주민등록초본에 있는 본인의 병역사항을 기재합니다.

○ 군별, 병과, 최종계급, 군번, 복무기간 등을 기재하되 기억이 나지 않거나 구분이 애매한 경우에는 주민등록초본상의 기재사항에 따릅니다.

○ 미필사유: 제2국민역, 병역면제, 연령미달, 입영연기 중, 여자 등을 기재합니다.

⑩ 학력

본인의 최종학력이 표기되도록 기재합니다.

○ 학교명: 본인이 졸업한 학교명이 현재 폐교, 학교명의 변경 등의 사유로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졸업당시의 학교명을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기간: 입학년월일, 졸업년월일을 기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입학년월·졸업년월만 기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 전공학과: 전문대이상의 학력기재 시 적습니다.

○ 소재지: 학교의 소재지를 기재합니다. (동·면단위까지 적습니다.)

⑪ 경력

본인의 가장 최근 경력이 나타나도록 기재합니다. 경력사항은 공무원으로서의 재직경력 뿐만 아니라 민간기업의 근무경력도 기재

⑫ 가족사항

본인(및 배우자)의 가족사항을 기재합니다.

○ 기재 순서는 직계존속, 배우자, 직계비속, 형제자매 순으로 기재합니다.

○ 직계존속, 배우자, 직계비속은 동일한 주민등록표상에 없다하더라도 모두 기재

⑬ 북한 및 해외거주 가족

○ 가족의 범위를 어디까지 한다는 규정은 없으나, 본인의 직계존·비속, 배우자, 형제자매 중 북한이나 해외에 거주하는 가족은 반드시 기재합니다.

○ 단순히 해외유학, 사업상의 목적으로 국외에 체류하지만 주민등록상 주소는 국내에 있는 경우에는 해외거주 가족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⑭ 교우관계

본인의 초·중·고·대학의 교우 중 2명에 대해 인적사항까지 기재합니다.